

## [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] 경영환경개선 희망 **소상공인(성주, 상주) 추가 모집** 공고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본 사업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을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. 7. 21.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작성 및 사업관련 문의: ☎1800-8730

신청기간 및 제출방법

- 접수기간: 2025. 7. 21.(월) 10:00 ~ 8. 11.(월) 17:00 마감기한 엄수
- 접수방법: 아래 방법 중 택1

① 온라인 (휴대폰) 신청	○ ‘모이소’ 앱 설치 후 소상공인관에서 ‘새바람체인지업’ 신청 (작성 및 사진 첨부 용이, 신청방법 QnA 참고) - 포털사이트에서 “모이소 앱 다운로드” 검색, Google Play 스토어 혹은 App Store에서 “모이소” 검색하여 설치
② 우편 접수	○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- 접수처: 경북 의성군 안계길 165, 3층 경북행복지원단
③ 방문 접수	○ 점심시간(12:00~13:00) 및 공휴일제외 접수 ① 구미시 이계북로 7, (외부상가 105호) 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 ② 의성군 안계길 165, 3층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

유의사항

- 신청자 **본인이** 공고문을 확인·숙지하고 **서명 후 신청**해야 하며, 공고문 및 첨부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신청자 모집 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.
- 2021~2024년 본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 1차 신청자는 추가 모집 대상자가 아닙니다.
- 1인 1건만 신청 가능,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(심사제외 및 선정 취소)

선정결과 통보

- 9월 5일(예정) 진흥원 홈페이지 ‘공지사항’에 선정자 목록 게시 및 통보  
※ 단,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1. 개요

○ 사업명 :	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
○ 신청대상 :	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성주, 상주 소재의 소상공인 (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)
○ 선정규모 :	성주, 상주 9개소 정도 ※ 지역별 선정 수는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름. 타지역 신청 불가
○ 지원내용 :	① 컨설팅 서비스(필수 선택) ② <b>점포환경개선 지원금(중복 선택 가능)</b> - 업체당 지원한도(500만원) 한도 내 홍보물제작(100만원), 옥외 간판교체(200만원), 점포내외부개선(300만원), 시스템개선(200만원), 키즈케어존 구축(200만원) 中 다수 선택하여 신청 - 공급금액의 80%, 세금지원불가 ※ 공고문 3p 세부지원내용 확인
○ 상시접수 :	2025. 7. 21.(월) ~ 8. 11.(월) - 온라인: '모이소'앱
○ 방문접수 :	- 온라인 신청 및 우편 발송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 요망 - 공휴일 제외,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 - 주소①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, (외부상가 105호) 경북경제 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 - 주소② 경북 의성군 안계길 165, 3층 경북행복지원단
○ 접수마감 :	2025. 8. 11.(월) 17:00 기한 엄수
○ 선정발표 :	2025. 9. 5.(금) 예정, 선정자 개별 통지

## 2. 컨설팅 서비스 신청(상세)

- 신청가능 분야: 신청서에서 '컨설팅 분야' 선택 가능
  - 무료 제공, 필요한 경우 3회 이후 추가 컨설팅 가능
- 상담일정: 선정 통보 후 진흥원에서 매칭하여 연락이 가며, 3회 상담 일정에 대해 각자 조율 가능

### 3. 점포환경개선 신청(상세)

구분	신청분야	세부지원내용	지원방법	지원한도
필수	컨설팅	점포 활성화를 위한 경영노하우, 시설환경개선 자문, 기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	컨설턴트 1~3회 방문	
다수선택	홍보물제작	<b>홍보물판촉물, 제품포장재, 오프라인광고</b> ※ 오프라인 광고: 현수막, 전단지, 리플렛, 카달로그 가능 ※ 점포내외부 설치는 홍보목적이라하더라도 불인정 ※ 홍보판촉물 및 제품포장재: <b>선정 후 진흥원 확인받아 추진</b>	진흥원→ 소상공인	100만원
	옥외 간판교체	<b>신규간판 설치, 간판 교체, 간판내부설비 교체</b> ※ 채널간판, 플렉스간판, 철재(갈바)간판, 고무스카시 간판, 이미지그래픽 간판, 지주간판, LED 교체, 돌출간판, 전광판 ※ 불법 간판 제외, 점포 외부에 설치한 것만 인정		200만원
	점포환경 개선	<b>내부인테리어, 점포 앞 환경정비, 화장실 개선, 조명 및 전기공사, 상품진열 쇼케이스, 맞춤형 부착형 진열대, (식당) 입식테이블로 교체, (미용실) 미용의자 교체</b> ※ 도배, 도색, 도장, 코팅, 바닥철거, 타일, 벽철거, 시멘트, 출입문(자동문), 에어컨, 환풍기(덕트), 작업대, 데크, CCTV 기기, 소독기, 살균기, 업소용 식기세척기, 포충기, 도어락, (미용실)벽면거울설치 인정		300만원
	시스템 개선	<b>POS, 키오스크, 테이블 오더, 서빙로봇</b>		200만원
	키즈존 구축	<b>아동편의시설 구축(점포 내 간이 키즈카페, 유아의자, 유아세면대)</b>		200만원
<b>업체당 최대 지원한도</b>				<b>500만원</b>

- **지원 불가능 품목:** PC(노트북), TV, 냉장고, 에어컨, 소파, 가스레인지, 전자기계, 가구, 집기류, 공기청정기, 머리감는의자, 냉난방기(보일러), 업종과 관계없는 설비, 온라인광고, 동영상 제작, 홈페이지 제작, CI 혹은 BI 디자인 비용만 신청하는 것, 불법 간판
- **선정제외:** 신청하는 점포(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점포)에 대해서만 경영환경개선 지원 가능함. 영업예정인 곳,接客장소가 아닌 곳, 창고, 임대업 대상지 등 지원 불가.

## 4. 신청자격

### □ 지원자격 관련

-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 주소가 성주, 상주에 등록되어 있고,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(사업자등록 기준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)

### □ 소상공인 기준
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
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
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(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)
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[붙임2]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, [붙임3]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.
- 용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[붙임1]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

## 5. 선정

### □ 평가 및 선정

- 평가기준: 접수기한 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아래 평가표에 따라 배점

※ 제출되지 않은 증빙 관련 평가항목은 최하점부여

※ 가점의 경우,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인정

- 선정기준: 사업 활용계획의 적정성, 컨설팅 필요성, 지속경영의지, 연매출 기준, 연매출 감소율, 업력, 현 영업장에서의 운영기간 등의 평가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

- 선정방법: 정량 및 정성평가의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지역별 목표 수까지 선정하며, 지역별 예산 내에서 금액 조정하여 선정

- 선정발표: 9월 5일(예정)

- 통지방법: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'공지사항'에 게재

### 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제출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

- 불법성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해야하며,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

## ※ 평가표

평가항목 및 배점		평가내용 상세(판단 서류)								
정성 (60점)	사업 활용계획의 적정성(30점)	환경개선 등 지원 필요성(개선희망장소가 접객 가능 영업장인지 확인), 사업 활용에 따른 효과(업종별 신청품목의 적정성)								
	컨설팅 기대효과 (10점)	컨설팅 시 기대효과 및 향후 적용 가능성								
	지속경영의지 (20점)	노후화 정도 확인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 (노후화가 심하여도 업종별 매출액보다 신청업소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폐업 위기 가능성이 있으므로, 종합적으로 판단)								
정량 (40점)	연매출 기준(15점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5천만원 이상 ~ 1억 5천만원 미만</td> <td>1억 5천만원 이상 ~ 3억원 미만</td> <td>3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</td> <td>5억원 이상 혹은 5천만원 미만</td> </tr> <tr> <td>15</td> <td>14</td> <td>13</td> <td>12</td> </tr> </table>	5천만원 이상 ~ 1억 5천만원 미만	1억 5천만원 이상 ~ 3억원 미만	3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	5억원 이상 혹은 5천만원 미만	15	14	13	12
		5천만원 이상 ~ 1억 5천만원 미만	1억 5천만원 이상 ~ 3억원 미만	3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	5억원 이상 혹은 5천만원 미만					
	15	14	13	12						
	접수기한 내 제출된 매출액 증빙서류로 판단									
연매출 감소율(10점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30% 미만~ 20% 이상</td> <td>20% 미만~10% 이상</td> <td>10% 미만~5% 이상</td> <td>5% 미만 혹은 30% 이상</td> </tr> <tr> <td>10</td> <td>9</td> <td>8</td> <td>7</td> </tr> </table>	30% 미만~ 20% 이상	20% 미만~10% 이상	10% 미만~5% 이상	5% 미만 혹은 30% 이상	10	9	8	7	
	30% 미만~ 20% 이상	20% 미만~10% 이상	10% 미만~5% 이상	5% 미만 혹은 30% 이상						
10	9	8	7							
접수기한 내 제출된 매출액 증빙서류로 판단										
업력(10점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10년 이상</td> <td>10년 미만 ~ 5년 이상</td> <td>5년 미만 ~ 3년 이상</td> <td>3년 미만</td> </tr> <tr> <td>10</td> <td>8</td> <td>6</td> <td>4</td> </tr> </table>	10년 이상	10년 미만 ~ 5년 이상	5년 미만 ~ 3년 이상	3년 미만	10	8	6	4	
	10년 이상	10년 미만 ~ 5년 이상	5년 미만 ~ 3년 이상	3년 미만						
10	8	6	4							
사업자등록증 등록된 개업일 ~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										
현재 영업장에서의 운영 기간(5점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5년 이상</td> <td>3년 이상 ~ 5년 미만</td> <td>1년 이상 ~ 3년 미만</td> <td>1년 미만~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4</td> <td>3</td> <td>2</td> </tr> </table>	5년 이상	3년 이상 ~ 5년 미만	1년 이상 ~ 3년 미만	1년 미만~	5	4	3	2	
	5년 이상	3년 이상 ~ 5년 미만	1년 이상 ~ 3년 미만	1년 미만~						
5	4	3	2							
접수기한 내 제출된 사실증명(사업자등록변경내역)으로 판단 변경내역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판단										
가점사항(최대 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착한가격업소: 5점</li> <li>-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: 3점</li> <li>- 사회적배려자 여부(기초수급, 장애우, 국가유공자 등): 3점</li> <li>-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인증서: 5점</li> <li>-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 대표자의 경우: 3점</li> </ul>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착한가격업소(진흥원에서 공고일 기준 조화)</li> <li>- 그 외 가산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빙 기준으로만 가점 부여하므로 '7.제출 및 확인서류' 확인할 것</li> </ul>									

## 6. 참고사항

### □ 시공/제작 착수 관련

- 시공업체는 경북 도내 소재 업체로 제한(선정 후 경북도재 소재 시공사에서 견적서 수령해야 함)
- **시공업체당 최대 5개 점포**(본 사업 참여 소상공인)로 제한
  - ※ 시스템개선의 경우 적용 제외
- 소상공인은 선정된 이후 진흥원에 시공업체의 정보를 제공해야함
  - ※ 컨설턴트 대면 전, 제출 요망
- 선정되기 전, 사전 시공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

### □ 추진 일정

\*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○ 접수 기간 :	2025. 7. 21. ~ 8. 11.까지
↓	
○ 평가 기간 :	2025. 8월 중 ※ 정량 및 정성 평가 (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기준으로 평가)
↓	
○ 선정 발표 :	2025. 9. 5. (예정) ※ 진흥원 홈페이지 '공지사항'에서 확인 가능, <b>선정자</b> 개별 통보 예정
↓	
컨설턴트 매칭 및 상담	2025. 9. 8. ~ 9. 12. (예정) ※ 선정통보→ <b>시공(제작)업체</b> 정보를 진흥원에 제공 후→컨설턴트 매칭
○ 공사착수 및 금액 지불	컨설턴트 상담 이후 ~ 개별일정 ※ 계획한 공사(견적서와 일치하는 공사 진행할 것) 진행 및 완료 후 → 소상공인이 시공/공사업체에 직접 금액 지불(공사 총 금액 집행)
↓	
○ 지원금 신청	~ 2025. 10. 20.까지(2차 신청기한) ※ 지원금 신청서류(선정업체에 별도 안내 예정)를 컨설턴트에게 제출 → 컨설턴트의 보완 요청에 응하여야 함 → (컨설턴트가 업체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) →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
↓	
○ 지원금 지급 시기	~ 2025. 11. ~ 12. ※ <b>지원금 신청 접수순으로</b> 지급되며, 보완요청 및 현장점검을 위해 보류되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.

## 7. 제출서류 안내

구분	제출서류	검토사항
서식 다운로드 서명 후 제출	사업 지원신청서	[서식1]
	사업장 현황	[서식2] 컴퓨터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현황소개 수기 작성 (후 사진 촬영) 및 영업장 현황사진을 모이소 어플로 등록
	시공 계획서	[서식3] 시공사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 작성 혹은 견적서 제출 가능 견적서 내 공급가액,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
	이행각서	[서식4]
	참여 협약서	[서식5]
	개인정보 수집 이용/제공동의서	[서식6]
발급 서류	사업자등록증	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영업신고증 불가)
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정부24, 홈택스, 세무서,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 - 공동대표일 경우, 모든 대표자들의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- 체납 미납일 경우 지원 불가,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
	건축물 대장	정부24,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
	소상공인 확인 증빙	<상시근로자 없는 경우>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<sup>1)</sup> <상시근로자 있는 경우> -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(기간: 직전 사업연도 1~12월)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<sup>1)</sup> ※ 자격요건 확인, 유효기간 이내 자료 제출
	<b>사실증명</b> (사업자등록변경내역)	(온라인) 홈택스>'증명 등록 신청'>'사실확인 후 발급증명'> '사업자등록 변경내역'> 신청>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발급 (오프라인) 세무서 민원실>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변경내역이 없을 경우 미발급될 수 있음
매출액 증빙서류	① 과세사업자: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면세사업자: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서 혹은 홈택스 (기간: 2023년 1월 ~ 12월까지, 2024년 1월 ~ 12월까지)	
가점사항 제출서류 (해당 점포만 제출)	- 착한가격업소 -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- 사회적배려자(기초수급, 장애우, 국가유공자 등) <sup>2)</sup> - 백년가게 소상공인 - 청년 소상공인 ※ 제출한 경우(유효기간 내)에 한하여 가점 인정	

**<사업 관련 자격 확인 참고>**

- 1) 사업지원제외업종 총괄표: 붙임1
- 2)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: 붙임2
- 3) 소상공인 기준: 붙임3

**<제출서류 준비 시 참고>**

- 1) **소상공인확인서(문서제목: 중소기업 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)**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정, '중소벤처24' 또는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에서 발급 가능하며, **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"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"는 인정하지않음(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충족하지 않음)**
  - 온라인: 중소벤처24 ([www.smes.go.kr](http://www.smes.go.kr))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[sminfo.mss.go.kr](http://sminfo.mss.go.kr))
  - 오프라인: 발급 불가
- 2) **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**
  - 온라인 : 국민건강보험([si4n.nhis.or.kr](http://si4n.nhis.or.kr))
  - 오프라인 : 1577-1000(팩스 발급) / 지사 방문 / 주민센터 무인발급기
- 3) **사실증명(사업자등록변경내역), 매출액증빙서류**
  - 온라인 : 홈택스([hometax.go.kr](http://hometax.go.kr))
  - 오프라인 : 세무서 민원실
- 4) **기타 행정서류**
  - 온라인: 정부24([www.gov.kr](http://www.gov.kr))
  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무인발급기
  - 발급가능서류: 사업자등록증, 국세·지방세완납증명서, 건축물 대장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5) **가점관련 서류**
  - **착한가격업소**: 공고일 기준 등록 여부 진흥원에서 확인
  - **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**: 증명서 제출업체에 한함
  - **사회적배려자**: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자를 인정하며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 증빙(요금경감 고지서) 제출
  - **백년가게 소상공인**: 지정서 혹은 인증현판사진 제출업체에 한함
  - **청년 소상공인**: 주민등록등본 혹은 기타 증빙(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가능한 증빙)

**□ 추가 문의**

- 소상공인상담센터(☎1800-8730)로 전화 문의 가능
- 하단 QR코드를 통해 설치 또는 구글(앱)스토어 '모이소' 검색 후 설치



안드로이드 전용



아이 폰 전용

## [붙임1] 지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「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중인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 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## [붙임2]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연 평균 매출액
1. 식료품 제조업	C10	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르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 임업 및 어업	A	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50억원 이하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30억원 이하
33. 정보통신업	J	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		

### [붙임3] 소상공인 기준

#### ①연평균매출액 +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

□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 + 상시근로자수)을 만족하는 자

\*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① (연평균매출액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『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』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
-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

\*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 연매출액로 대체(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)

②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

-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, 「장애인기업지원자금」에 한하여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

-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

구 분		내 용
산정 기준	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	직전 사업연도 1월~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	② 업력 12개월 이상	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	③ 업력 12개월 미만	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
	④ 업력 1개월 미만	산정일 현재 인원
확인 서류	상시근로자 없는 경우	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
	상시근로자 있는 경우	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),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, 월별(반기별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소상공인확인서 등

\*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, 기준 ①을 우선 적용